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835
----------	-------

발의연월일 : 2026. 2. 12.

발 의 자 : 황운하 · 김재원 · 박은정
차규근 · 한창민 · 서왕진
윤종오 · 용혜인 · 정춘생
신장식 · 김선민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부동산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대응체계는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이상거래 모니터링 · 신고 접수와 함께 지자체의 현장 조사 및 특별사법경찰 수사, 경찰 수사, 국세청 · 금융당국 점검 등이 연계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대응 체계는 일시적 단속과 사후 제재에 치중되어 있어, 법인 · 다주택자 · 부동산투자회사 등을 중심으로 한 조직적 투기, 허위 · 가공 거래를 통한 시세 왜곡 등 지능화 · 고도화된 투기 행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 실수요와 무관한 투기 수요가 반복적으로 시장에 유입되면서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고, 부동산이 거주 기반이 아닌 투기의 수단으로 기능하는 상황이 방치되고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동산감독원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따라 부동산감독원이 부동산 시장을 효과적으로 조사 및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사법경찰직무 수행의 근거가 되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53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황운하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감독원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683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3호 중 “국토교통부, 특별시·광역시·도”를 “국토교통부, 부동산감독원, 특별시·광역시·도”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 경찰관리)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로서 그 소속 관서의 장의 제 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 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 한 자 중 7급 이상의 국가공무 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 관의 직무를, 8급·9급의 국가 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 방장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사법 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 경찰관리) ----- ----- ----- ----- ----- ----- ----- ----- ----- -----.
1. ~ 52. (생 략)	1. ~ 52. (현행과 같음)
53. <u>국토교통부, 특별시·광역시· 시·도</u> 및 시·군·구에 근무 하며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조사·단속 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53. <u>국토교통부, 부동산감독원, 특별시·광역시·도</u> ----- ----- ----- ----- -----